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Responsibility in Academic Libraries

조 윤 희(Yoon-Hee Cho)*

목 차

- | | |
|--------------------|-------------------|
| 1. 서론 | 3.1 법적·제도적 접근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이해관계자적 접근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3 정보 수요적 접근 |
| 2. 이론적 고찰 | 4.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 |
| 2.1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의의 | 4.1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 |
| 2.2 사회적 책임의 국제적 표준 | 4.2 이해관계자 서비스 |
| 2.3 선행 연구 동향 | 4.3 시장·수요 서비스 |
| 3.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차별 없는 열린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자원으로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의 평등과 지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ISO 26000, IFLA의 LSDP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을 법적, 이해관계자적, 정보 수요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사회적 책임의 개념, 국제적 표준과 그 접근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Library laws and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declared social responsibility ensuring equal access and available support of information resources through open services all being no discrimination due to race, creed, gender, age or for any other reason. University libraries should accomplish the social responsibility ensuring equality of information access and intellectual freedom for all users that the cultural development of organization, community, and Nation are contributed. This study reviewed the criteria for social responsibility making such as legal, stakeholder, and information demanded approach based on Library laws, ISO 26000, and Access to Librar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hecklist. This research established the basic concept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tried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starting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through providing of activity programs in social responsibility.

키워드: 대학도서관, 사회적 책임, 윤리, 이해관계자, 국제 표준화, 도서관 경영, 도서관법
University Library, Social Responsibility, Code of Ethics, Stakeholder, ISO 26000,
Library Management, Library Laws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Northern Iowa(Yoon-Hee.Cho@uni.edu)
논문접수일자 2007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16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의 발전과 함께 도서관은 총체적으로 인류 자원을 수집, 정리, 보존과 그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IFLA(1999)는 도서관의 지적자유로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표명하였다. 도서관은 이를 기반으로 지식, 사상, 문화의 발전을 향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등한 정보 자원으로서의 접근을 보장하는 열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대학도서관은 모체 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학도서관 고유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도서관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지니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 소장과 접근 자원으로서의 동등한 접근과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학도서관은 현재 적절한 정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비서비스 영역에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정보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하여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2006)은 도서관이 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1997)에서도 도서관인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자아성장 의욕 고취,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이용자의 이념,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열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선언하는 사서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예외 없이 대학도서관도 차별 없는 열린 서비스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이 소장한 정보자원으로서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학도서관은 현재 대학도서관의 경영과 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명확한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이 이미 만연해 있는 제한적 규정의 의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고집한다면, 이용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도서관이 아닌 곳에서 찾거나 도서관과 더욱 멀리하면서 더욱 소수의 이용자만이 대학도서관을 찾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이에 대학도서관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경영과 정보서비스 정책에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법과 제도, 이해관계자, 정보 수요적 측면에서 검토하

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대학, 지역 사회, 국가를 망라하여 정보 접근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 대학도서관의 표상을 재정립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전면 개정되어 2007년 4월부터 전격 시행되는 도서관법에서 최초로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초적 연구이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선행적 분야로써, 오랜 시간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경영학적 개념과 함께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 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제시하였다.

현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조직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서 채택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 ISO 26000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ISO 26000, 도서관법, 도서관인 윤리 선언,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의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과 LSDP(Standing Committee of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s Persons)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을 법적·제도적, 이해관계자적,

정보 수요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그 수행 방안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와 이해관계자 서비스, 시장·수요 서비스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ISO 26000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로 한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도서관의 이해관계자와 가치 사슬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다. 특히, 경영학 분야의 선행 연구들의 문헌 조사를 통하여 개념의 변천을 통한 이해관계자 정의와 국제 표준화 문서의 검토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은 문헌 고찰에서 제시한 이론적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그 영역을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과 수행 방안은 상호연계성의 개념을 토대로 구성함으로써 이론과 접근 및 실행에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의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중반에 출현하여 현재까지 기업 경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 개념이다.

최초로 Bowen(1953)은 사회적 책임을 사회의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원칙을 따르는 의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사회적 책임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요소들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의가 일반적인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정의로서 Maignan과 Ferrel(2004)은 그 대상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책임의 대상을 사회 전체로 규정하기 보다는 보다 직접, 간접적으로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시각들이 지배적이다.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2006)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다른 정의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도 모든 도서관과 모든 이용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한국도서관협회 1997) 또한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무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또한 사회적 책임의 그 범위가 제한이 없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사회적 책임은 그 범위나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사회 전체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이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적 책임 개념을 적용하여 그 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범위와 대상 및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그 활동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은 정보 접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지적 자유를 수호하는 정책과 의사결정, 이를 실천하는 행위를 총괄하는 조직의 의무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 범위는 대학도서관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 집단, 조직 등의 이해관계자로 한정한다.

둘째, 사회적 책임의 활동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셋째, 조직과 지역사회의 이익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전문적 서비스를 개발하여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에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로서 공헌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2 사회적 책임의 국제 표준화(ISO, 2006)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는 기업, 정부, 사회단체 및 조직 등 규모나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ISO 26000은 현재 준비단계(20.60)로써, 2008년 후반기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06년 10월에 배포된 2차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운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배경, 사회적 책임의 원칙, 주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과 사회적 책임 실행에 관한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야별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운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배경 부문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배경과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국제적 통제, 국제화, 이해관계자 관점, 노동문제 및 아웃소싱과 공급체인, 지속적인 개발, 조직적 통제 등의 배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의 이해 부문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일반적 정의와 본질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결정하는가와 모든 조직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용하는 문제 및 사회적 책임에 있어 이해관계자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책임을 일반적 원칙, 실제적 원칙 및 운영 원칙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 원칙은 모든 환경에 적용하는 최우선의 원칙으로서 국제적 협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적 원칙에는 환경, 인권, 노동문제, 조직적 통제, 사업의 공정성, 커뮤니티 및 고객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운영 원칙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원칙으로 책임, 범위, 융화, 존재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접근, 투명성, 생애주기 접

근 등으로 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 주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에서는 실제적 원칙에서 언급하였던 세부 분야별로 핵심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위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책임 실행에 관한 지침에서는 조직 운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배경 분석, 전체 조직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융화,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협력, 사회적 책임의 일상적 실행, 성과 증진의 검토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SO 26000은 현재 2차안으로서 최종 표준규격이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표준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2.3 선행 연구 동향

대학도서관에 있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연구는 극히 소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의 조사는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Berninghausen(1972)은 최초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권리의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3년 미국도서관협회 컨퍼런스는 이들 전통적 문제를 다시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Berninghausen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every person) 위해 모든 정보(all information)에 자유로운 접근(free access)을 제공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미래 사서들의 철학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Schuman(1976)은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초기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다. 최초의 시도는 흑인과 같은 소수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도에 의의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Benavides(1989)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문제는 도서관 운동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도서관이 다문화적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 서비스와 같이 소수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 수행의 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Rude와 Hauptman(1990)은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현재 도서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비서비스 영역에 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의 실행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 아이디어로서 공공도서관 모형과 유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한 교수, 학생 등과의 직접적 접촉, 뉴스레터, 대학신문 등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제공,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적 정서적 편의 제공,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위치한 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 요구에 대한 비용-효과 기반 정보서비스의 제공은 사서들을 더욱 활기 있게 만들고,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만족감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Segal(1991)은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으

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까지 야기하는 사회적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권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에 접근과 교육의 지원 및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윤리적 책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AIDS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제공, 교육자로서의 사서 역할, 정책과의 연계, AIDS 지식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관한 비즈니스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로서 교육적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하였다.

Forrest(2005)는 Dundee 대학 도서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접근의 향상 활동으로 IFLA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는 장애인 평등의 법적 환경과 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쉬운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IFLA 체크리스트 항목에 기반 한 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최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제고와 직원, 학생들로부터의 지원이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의 접근을 확장하는데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3.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

3.1 법적·제도적 접근

ISO(2006)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안)

은 사회적 책임의 기본 방침으로서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관리에 활력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관리나 그 실행을 위한 기초로서 채택되고 선언된 일반법과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2006) 제34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 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법 제 1조는 도서관법의 주요 목적으로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그 목적을 정의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주요 업무로는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 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 정보 함양에 필요한 업무 수행과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기타 대학도서관의 기능 수행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각 대학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규정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운영 및 소장 자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국·내외 학술자료를 수집, 정리 및 보존을 통하여 그 교직원과 재학생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학생, 교직원,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등으로 그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존립에 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모법인 도서관법은 그 목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접근과 알 권리의 보장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써 누구나가 원하는 정보로의 접근과 알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중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은 그 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음을 동법은 언급하고 있다.

반면, 대학도서관이 자체 제정하여 대학도서관의 경영과 관리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규정에는 도서관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나 책무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 본 도서관법과 대학도서관의 규정을 근간으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의 접근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대학도서관의 자체 규정에도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재까지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규정 사항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문화발전에 공헌하는 주체로써 그 윤리적 측면에서 대학도서관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도서관법은 그 기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들이 그들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들은 그 자체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규정에는 대학도서관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법적·제도적 접근에 근거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개별 대학도서관은 어떠한 세부 원칙과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인가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접근 방법 중 법적·제도적 접근은 대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직의 의무이다. 이 접근 방법은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행하는 가장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접근 방법이지만, 동시에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3.2 이해관계자적 접근

ISO(2006)는 사회적 책임의 체제(framework)로서 조직 전체나 조직 내부 및 외부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통합과 실행의 체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는 조직이나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조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로 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Daft와 Marcic(2006)도 이해관계자를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 내부와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적 정의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문서에 표현된 개념(조윤희, 2006)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규정하고자 한다.

실제로 대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선언서에는 대학도서관의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용어를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 그룹(users, members, faculty, students, staff, clients, patrons, etc.), 전문가 그룹(academic community, scholarly community, national & international scholarly community, etc.), 지역사회, 국내·외 커뮤니티(off campus, external organization, diverse society, wider communities, individuals & institutions, comprehensive institution, scholarly communities worldwide, rest of the world, state, nation, world, etc.) 등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용어를 참조로 내부 이용자 그룹, 교내 이용자 그룹, 교외 이용자 그룹, 관련 전문가 그룹, 지역·사회 그룹 등으로 대학도서관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분류하였다.

첫째, 내부 이용자 그룹은 해당 대학도서관에 고용된 정규, 비정규직 혹은 사서직, 행정직, 기술직 등을 망라하여 내부 이용자로 규정한다.

둘째, 교내 이용자 그룹은 대학도서관의 핵심적 이용자 그룹으로서 재학생, 교수, 교직원 등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용자 그룹을 의미한다.

셋째, 교외 이용자 그룹에는 대학도서관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거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용자 그룹을 의미한다.

넷째, 관련 전문가 그룹은 대학도서관의 학술, 전문 활동과 관련된 조직이나 협회, 그룹 등의 활동과 관련된 국내와 국외 이용자 그룹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특수 목적을 가진 그룹으로 대학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개인이나 그룹이다. 이는 대학도서관 운영, 관리와 관련된 대학 내부 및 외부의 각종 위원회를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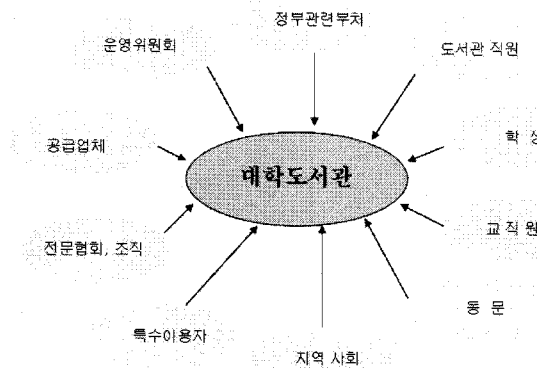
〈그림 1〉은 대학도서관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은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유사한 영향의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이해관계자는 대학도서관의 직원,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 지역사회, 특수 이용자, 각종 전문협회 및 조직, 각종 위원회, 정부관련 부처 등 대학도서관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포함한다.

대학도서관은 이들 개별 이용자 그룹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이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 집단의 구성과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대학도서관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자적 접근 방법을 고려



〈그림 1〉 대학도서관의 이해관계자 집단

하는 것은 대학도서관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대학도서관과 그 이해관계자가 더불어 성장하는 상생관계(win-win relationship)를 추구하는 것이다.

3.3 정보 수요적 접근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있어 정보 수요적 접근은 법적, 제도적 접근이나 이해관계자 접근과는 다소 대별되는 상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특정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하에 대학도서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유용성에 기반을 두고 그 효과를 최대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원칙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ISO(2006)는 조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당위성(legitimacy)을 공공 부문, 사적 부문, 임의적(자의적)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공공 부문(public sector)은 일반 대중적 합의나 민주적 책임에서 도출할 수 있는 당위성으로 정책적 개발, 규정 및 서비스의 전달을 포함한다.

둘째, 사적 부문(private sector)의 당위성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달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당위성으로 법을 준수하고 세금의 납세를 통하여 적법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셋째, 임의적 부문(voluntary sector)은 자선 활동과 같이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선언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조직의 사명과 일치하는 사회적 활동 영

역에 기금 등을 헌납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에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으로 시장 수요 접근을 고려하는 것은 적극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한 비서비스 영역에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상생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사회적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도서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은 국민의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다. 특정한 사유나 차별적인 조치로 정보의 접근을 통제하거나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도서관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 중 정보 수요적 접근은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동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조직체로서 그 존재의 당위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으로 고려된다.

4.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

4.1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으로의 접근을 보장하

는 것이 대학도서관이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기본이다.

정보의 접근에 있어 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주요 활동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접근 가능한 서비스는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IFLA(2005)의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위원회(LSDP: Standing Committee of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s Persons)에서는 관중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에서 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보장하는 도구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물리적 접근, 매체 형식,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도서관에서 채택하여 그 이용자들에게 정보로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최소한의 권고 사항으로써 개별 도서관 상황 하에서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경제적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의 실현은 도서관 직원들의 사고나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도서관 건물, 서비스나 새로운 계획 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 자원으로 접근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애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학도서관으로

부터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의 수행 방안으로서 IFLA(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부분 대학도서관의 위치는 대학의 모든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확장하여 신체적, 시각 및 청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대학도서관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물리적 장치의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활용 방안으로 대학도서관 접근을 위한 안내 표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설치를 추가하고, 대학도서관의 접근에 가장 편리한 구역에 장애인 표시가 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다.

주차 장소에서 대학도서관으로의 진입 도로는 진행에 방해물이 없도록 정비하여 건물의 내부까지 연결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할애한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주요 출입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층에 설치하며, 승강기와 계단 내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대학도서관 내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장치나 장비를 설치한다.

대학도서관내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가 사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검색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과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배치하거나 휠체어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자료 검색용 컴퓨터를 별도로 할당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인쇄자료에서 전자 자료에 이르는 모든 도서관 자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예로 말하는 도서(talking books), 대사 자막이나 수화(sign language)를 제공하는 비디오/DVD 도서, 점자 도서, 전자 도서나 기타 비도서 자료 등을 구비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한다.

셋째, 모든 이용자에게 접근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특정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자료로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용자 그룹의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려면 도서관에서 그들이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장애와 심리적 장벽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위한 특정 서비스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한 가정으로의 배달 서비스,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봉사활동 서비스, 읽기에 문제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읽기 서비스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스캐닝 서비스, 읽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한 정규적 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자원으로의 접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교육을 통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은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이해관계자 서비스

ISO(2006)는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때 조직 내부와 외부를 포괄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관심, 조직과의 관계를 공급과 가치 사슬을 기반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서비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그들의 기대와 관심을 이해하고 있는 조직에 도움을 준다. 둘째, 사회적 책임 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복잡한 문제를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사회적 책임에 있어 조직 수준의 약속을 논증하거나 잠재적으로 그 신뢰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 다섯째, 조직이나 이해관계자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도서관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시작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증진하는 체

계적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들을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는 개별 접촉, 단체 면담, 포커스 그룹, 연구회나 세미나 개최, 공청회, 설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관심을 파악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동반자적 협력의 관계는 대학도서관과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win-win)의 창조적 방안이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증진하거나 새로운 기회, 개발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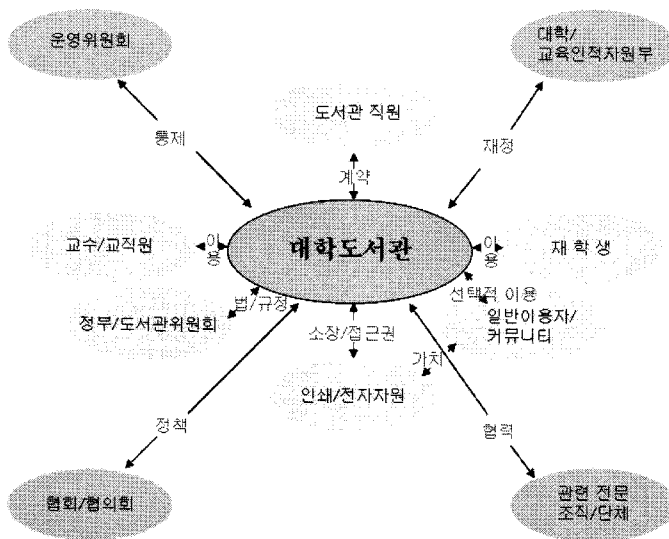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의 활동이 아니다. 이는 대학도서관의 내부 활동의 절차나 문화를 변화시

키는 범위에 이르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포괄하는 범위이다. 이러한 활동은 조직 내부나 외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학습 조직으로 진전하는 잠재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관계자 서비스와 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은 일관된 대화와 피드백의 순환과정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림 2>는 대학도서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간의 가치 사슬 모형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은 우선적으로 재정, 통제, 정책, 협력과 연계된 이해관계자 집단의 기대와 관심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도서관이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림 2> 이해관계자 가치사슬 모형

제공하고, 이들 이해관계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의 체계적인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도서관의 주요 이용자 그룹인 교수, 학생, 교직원 중 비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어떠한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여 대학도서관서비스 영역으로 유인할 것인가를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가치와 일반 이용자와 커뮤니티의 필요가 부합되는 정보서비스의 요구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법과 규정 및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대학도서관에 어떠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상호간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대학도서관은 정보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학도서관의 물리적, 가상적 공간의 서비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의 가장 주요한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정보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가 유용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 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대학도서관과 이해관계자간 견고한 신뢰 관계를 창출함을 의미한다.

4.3 시장·수요 서비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수행 방안으로써 시장·수요 서비스는 대학도서관의 개발과 연계되어 실행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조윤희(2005)는 대학도서관 개발의 필요성

과 함께 대학도서관의 개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였다.

첫째, 대학도서관이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대학도서관이 지향하는 비전을 달성하려면 다양한 개발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교수, 학습, 연구 활동을 주체적으로 지원 하는 자원의 확보와 자립을 통하여 탁월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개발 활동을 통하여 정보 제공 환경을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실례로 필요한 공간의 확장, 구조 변경, 장서기금의 확충 등을 통하여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물리적, 지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는 해당 대학을 넘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도 열린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대학, 지역, 국가, 국제적 다양한 커뮤니티와 그 가치를 공유할 때, 무한히 성장하는 유기 체임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개발은 그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하는 활동으로써 대학도서관이 이용자 친화적 환경과 뛰어난 자원을 확보하는 자립적 능력을 갖게 해 주는 활동이다.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개발 활동을 통하여 보다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물적·인적 자원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는 맥락에서 시장·수요 서비스는 <그림 2>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정보서비스의 가치를 기반으로 필요한 이용자에게 찾아가는 고품질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한다.

반면, 21세기는 협력과 제휴를 통한 상호 의존도가 더욱 가속화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더욱 많은 분야에서 비영리 조직, 영리기업, 그리고 정부 간 교차협력이 추진되고, 그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실례로 많은 대학이 창업 보육센터나 인큐베이터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 영리, 정부 간의 전략적이고 사회적인 제휴 관계로써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한 방안으로 대학도서관과 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 기업 간의 사회적 제휴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는 정보가 필요한 소규모의 영세 사업체에서 고품질의 정보를 정보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이용함으로써 연구투자(R&D)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개발이나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대학도서관은 기존의 자원과 전문인을 활용하여 조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위상과 함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시장·수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도서관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수요 서비스는 그 정보서비스의

가치가 기반이 되어 자의적 선택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대학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와 차별된다. 이는 사서들의 전문적 식견과 계속 교육을 통한 지식의 조직, 가공, 보고 등의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한다.

셋째, 시장·수요 서비스는 대학도서관의 개발 활동과 연계되어 대학도서관과 정보수요자 간 상생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고품질 정보는 이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다시 사회에 일부분 환원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도서관법에서 명시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은 조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나 태도, 믿음을 넘어서는 실천적인 실행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IFLA(2006)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계획(2006-2007)에서 대학도서관의 개발, 협력, 질적 경영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그 세부적 목표로 전 세계에서 접근 가능한 대학도서관의 자원 공유와 사서 및 정보전문가 역할의 개선과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현재 대학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서 성공적 학습자, 효율적 교육자, 생산적이고 우수한 학자를 지원하도록 전 세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계속적

학습과 훈련을 통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정보 전문가 및 사서의 자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현재 국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도서관법, ISO 26000, IFLA의 LSDP나 전략적 계획 등의 문서에서 대학도서관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은 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한 정보로의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정보 이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상호 협력과 제휴 활동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대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공정한 관리 등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가치 사슬 모형을 기반으로 그들의 기대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가치사슬 모형은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개발과 정책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시작이다. 대학도서관이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나갈지는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도서관인은 민족과 인류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운영주체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로 시작한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대학도서관의 운영 주체로서 도서관인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거나 접근 권한을 가진 정보자원은 현재의 제한된 서비스 영역을 넘어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할 때 정보의 효율성과 대학도서관의 존립의 가치는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도서관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용기와 그를 지원하는 부단한 지속적 학습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도서관의 조직 문화가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적 흡수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가 되려면 그 핵심은 대학도서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의 운영주체로써 도서관인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은 보다 완성도 높게 성취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한국. 국회. 2006. 『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서울: 대한민국법령.
- 한국도서관협회. 1997. 도서관인 윤리선언. 서울

- : 한국도서관협회. [online] [cited 2006. 12. 26].
 <<http://www.korla.or.kr/data/referen>

- ce/moral.asp>
- 조윤희. 2005. 대학도서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36(4): 211-231.
- 조윤희. 2006. 사명, 비전을 통해 본 대학도서관의 핵심 가치. 『한국문헌정보학회』, 39(4): 71-88.
- Bowen, T. J.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New York: Harper & Row.
- Maignan, I and O. C. Ferrel. 2004.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marketing: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2(1): 3-19.
- ISO. 2006. *ISO/WD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Geneva: ISO.
- Schuman, Patricia Glass. 1976. *Social responsibilities and libraries: a library journal/school library journal selection*. New York: R. R. Bowker.
- MacCann, Donnarae. 1989. *Social responsibility in librarianship*. Jefferson: McFarland.
- Berninghausen, David. 1972. "Social responsibility vs. the library ill of rights." *Library Journal*. Nov. 15: 3675-3681.
- Segal, Judith. 1991. "The Academic library and social responsibility: a focus on AID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17(4): 224-229.
- Irvall, Birgitta and Gyda Skat Nielsen. 2005. *Access to librar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hecklist*. Oslo: IFLA [online] [cited 2006. 12. 27]. <<http://www.ifla.org/VII/s9/nd1/ifla-pr-89e.pdf>>
- Rude, Renee and Robert Hauptman. 1990. To serve the unserved :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Academy.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Jan. 1990: 364-365
- Forrest Margaret E. S. 2005. Towards an accessible academic library: using the IFLA checklist. *Libraries: A voyage of discovery*. Oslo: IFLA. [online] [cited 2006. 12. 23]. <<http://www.ifla.org/IV/ifla71/papers/095e-Forrest.pdf>>
- IFLA. 2006. Strategic Plan 2006-2007. 2006. [online] [cited 2006. 12. 23]. <<http://www.ifla.org/VII/s2/annual/sp02.htm>>
- IFLA. 1999. Statement on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online] [cited 2006. 12. 23]. <<http://www.ifla.org/faife/policy/ifla-stat/iflastat.htm>>